

등록번호	교통행정과-14735
등록일자	2016.3.25.
결재일자	2016.3.25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자동차정비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황영배	정일근	이준영	03/25 이명균
협 조			

2016년 전반기 자동차정비업체 및 운수업체 지도·점검 계획



안전건설교통국
(교통행정과)

2016년 전반기

자동차정비업체 및 운수업체 지도·점검 계획

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위반 및 불법정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만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, 건전한 자동차 정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

I 큰 거 법령

- 자동차관리법 제53조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(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)

II 점검 개요

- 점검목적
 -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
 -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이용 구민의 편익 증대
 -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사업장 환경개선
- 점검기간 : 2016. 4. 1. ~ 5. 10. (40일)
- 점검반 운영
 - 합동점검
 - 자동차정비팀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
 - 자동차정비팀 및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
 - 자동차정비팀 및 운수업(버스, 택시)담당 주무관
 - 자체점검 : 자동차정비팀 별도실시

□ 점검대상 : 119개소

전문정비업소	종합정비업소	마을버스	시내버스	택시
96	종합 2, 자가 2	9	3	7

※ 무등록 정비업소(4개소) 및 일명 덴트카 도색업체(6개소) 단속을 병행하여 관리 사각 지대에 대한 행정력 확대

【 과년도 점검결과 】

구 분	처 분 내 역		비 고
2015년	· 등록취소	1건 (등록기준 미달)	신진자동차(홍제동)
	· 고 발	1건 (불법정비)	우리상운(북가좌동)

Ⅲ

점검사항 및 조치계획

□ 자동차 정비관련 점검

- 자동차 정비업체(자가정비 포함)
 - 정비책임자 및 정비인력 확보여부
 - 작업범위 초과 정비행위 여부(정비명세서 및 정비일지 확인)
 - 시설장비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
 - 자동차 정비표준시간 및 시간당 공임표 게시 여부
- 자동차 운수업체
 - 작업범위 위반 및 초과 정비 여부 현장확인
 - 차량의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 여부
 - 정비관리자(정비인력) 보유 및 정비계약 여부 등

□ 사업장 환경관련 점검

- 사업장 및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행정지도
- 환경정비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
 - ▶▶ 환경정비 개선은 「사업장 환경개선 명령」을 통지하여 조치

□ 조치계획

- 시설기준 미달 및 인력 미확보.....〔사업정지 또는 과징금〕
- 정비작업 범위초과.....〔고발 또는 사업정지〕
- 금지행위 위반.....〔사업취소 또는 과징금〕
- 필요시 관련부서 점검과 병행.....〔청소행정과, 환경과〕

- 따로붙임 : 1. 점검대상 현황 1부.
2. 자동차정비업체 점검표 1부.
3. 운수업체 정비시설 점검표 1부.
4. 적발확인서 1부.